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0. 20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황규철 의원(찬성자 6인)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0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10.10.14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, 지위향상, 복지향상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13조 등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'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운용 중인 조례안의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, 근거 법령인 상위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 2호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.
2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란 「여성농업인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3. 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·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함으로써 농어업·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, 국민식량자립기반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,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, 기초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)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,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라 함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.</p> <p>2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라 함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.</p> <p>3. “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”이라 함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3조(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) ①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여성농어업인”이란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.</p> <p>2. “여성농어업인단체”란 「여성농업인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</p> <p>3. “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함으로써 농업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,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.</p>	<p>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·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어업·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, 국민식량자립기반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)</p> <p>① 도지사는 「여성농어업인육성법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 제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「여성농어업인육성법」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)</p> <p>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, 기초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 7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13조(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)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13조(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)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,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어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
가. 농업: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

2. "농어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농업인: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나. 어업인: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 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□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여성농업인"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.
2. "여성어업인"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.
3. "여성농어업인"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.
4. "여성농어업인단체"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,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5. "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"이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5조(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)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
2.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
3.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
 - 가.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
 - 나.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

다.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,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라.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

4.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의 지원계획

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,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
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
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·도계획
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
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
을 각각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 및 시·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
도 또한 같다. 다만,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·도의 규칙이 정하는
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)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
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·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
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그 밖의
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,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
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)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
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
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
자문회의(이하 "자문회의"라 한다)를 각각 둔다.

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
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